의안번호	2209112
의 뢰 인	박지원의원
회 답 일	2025.4.3.
추계번호	24D1704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38조원(연평균 3조 8,000억원)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4년

(단위: 억원)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지방소멸대응기금
정부출연금
출연규모 상향 및
유효기간 폐지
(안 제23조 및
법률 제18545호
부칙 제2조 삭제)</td><td>2026</td><td>2027</td><td>2028</td><td>2029</td><td>2030</td><td>합 계</td><td>연평균</td></tr>
<tr><td>10,000</td><td>20,000</td><td>30,000</td><td>40,000</td><td>40,000</td><td rowspan="3">380,000</td><td rowspan="3">38,000</td></tr>
<tr><td>2031</td><td>2032</td><td>2033</td><td>2034</td><td>2035</td></tr>
<tr><td>40,000</td><td>50,000</td><td>50,000</td><td>50,000</td><td>50,000</td></tr>
</table>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(유효기간) 제2조 삭제	-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을 추가 확보 : 정부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되, 2026회계연도에는 2조원, 2027회계연도에는 3조원, 2028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함 -2031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을 삭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 및 법률 제18545호 부칙(유효기간) 제2조 삭제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회계연도마다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함에 따라 증액된 정부출연금만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○ 현행법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1조원씩[1] 2031년까지[2]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

○ 개정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증액하되, 2026회계연도에는 2조원, 2027회계연도에는 3조원, 2028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하고, 2031년까지로 되어있는 유효기간을 폐지하려는 것임

❑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으로 함

---

1) 현행법 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출연금 1조원
2.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

2)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(유효기간) ① (생 략)
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현행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38조원임

○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총 44조원임

○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총 6조원이 발생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에서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조원 등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38조원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34년

(단위: 억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금(A)	10,000	10,000	10,000	10,000	10,000	60,000
	2031	2032	2033	2034	2035	
	10,000	0	0	0	0	
개정안에 따른 정부출연금(B)	2026	2027	2028	2029	2030	440,000
	20,000	30,000	40,000	50,000	50,000	
	2031	2032	2033	2034	2035	
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
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(C=B-A)	2026	2027	2028	2029	2030	380,000
	10,000	20,000	30,000	40,000	40,000	
	2031	2032	2033	2034	2035	
	4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홍연	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홍연	02-6788-4673	limhy@assembly.go.kr